



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

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판단 기준

- 지역산업위기대응법(舊 국가균형발전특별법)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

* 24년 1월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없음

- 세부적용 기준

-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,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, 지점,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
-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부품·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(단, 거래비중 20% 이상(산업위기지역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), 산업위기 지역이 속한 광역시·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 시)

참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사업의 판단(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3)

제4조의3(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)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.

※ 국가균형발전법 ⇨ 지역산업위기대응법(2021.8.17 제정)으로 이관